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 10. 25 선고 2023가단76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소]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고요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종우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호

변론 종결 2023. 10. 11.

판결 선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제천시 D 답 2,659m²에 관하여 2021. 9.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2023. 3. 29. 접수 제53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이 법원 2021가소31767호로, C는 원고에게 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8. 4. 29.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21. 4. 22.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7. 14.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청주지방법원 2021나54518호), 2022. 11. 11.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C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23. 4. 13. 상고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다306130호, 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위 확정 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C는 2021. 10. 15. 제천시 D 답 2,659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형제인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2021. 9.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23. 3. 29.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21. 9. 23.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23. 3. 29. 기준 C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적극재산	E조합 계좌 예금	70,615,940원 ¹⁾ 을 제3호증 기준 잔액[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C와 사이에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 주장한다. 만약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고,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2021. 9. 23. C에게 송금한 돈 70,000,000원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도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70,000,000원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2021. 9. 23. 기준 C에게 자력이 있었다는 사실인정에는 변함이 없다.	(계좌번호 1 생략)
	2,979,319원	(계좌번호 2 생략)	
F조합 적금	4,000,000원	(계좌번호 3 생략)	
G 계좌 잔고	48,139,059원		
자동차	15,000,000원	아반떼(차량번호 1 생략)	
소계	140,734,318원		
소극재산	이 사건 판결금 채권	30,348,777원 ²⁾ 2023. 6. 9. 기준 잔액, 편의상 원고에게 유리하게 위와 같이 산정한다.	
소계	30,348,777원		

적극재산	자동차	15,000,000원	아반떼(차량번호 1 생략)
	19,770,000원	포터2씨티벤(차량번호 2 생략)	
H 계좌	22,195,352원	(계좌번호 4 생략)	
주식 가액	14,990,000원		
F조합 적금	6,000,000원	(계좌번호 5 생략)	
E조합 계좌 예금	5,662,654원	(계좌번호 1 생략)	
적극재산 소계	83,618,006원		
이 사건 판결금 채권	30,348,777원		
소극재산	자동차 저당 채무	25,000,000원	포터2씨티벤(차량번호 2 생략)
소극재산 소계	55,348,777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의 기준일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또는 등기이전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주식계좌 잔고, 주식, 예금 등은 원고가 쉽게 그 재산의 존재를 알기 어렵거나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인 원고로서는 시중 은행과 증권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판단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새미

1) 을 제3호증 기준 잔액[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C와 사이에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 주장한다. 만약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고,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2021. 9. 23. C에게 송금한 돈 70,000,000원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도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70,000,000원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2021. 9. 23. 기준 C에게 자력이 있었다는 사실인정에는 변함이 없다.

2) 2023. 6. 9. 기준 잔액, 편의상 원고에게 유리하게 위와 같이 산정한다.

3) 원고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미단으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달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